



보도시점

2026. 8. 19.(수) 11:00

배포

2026. 8. 19.(수) 06:00

2026. 8. 20.(목) 조간

국립종자원, 씨마늘 유통 철을 맞아 불법 판매 집중 단속

- ‘식용마늘’을 ‘씨마늘’로 둔갑 판매 등 불법 유통 차단
- 수입산 씨마늘 수입 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여부 등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농가에서 파종할 씨마늘(마늘 종구) 유통 성수기(8~9월)를 맞아 씨마늘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가을 파종 시기를 앞두고 국내 씨마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산 씨마늘 수입량을 전년대비 670톤으로 증가*했으나, 종자로서 부적합한 수입 식용 마늘이 씨마늘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씨마늘 수입 증가 현황: (25. 7.1~8.10) 72톤 → (26. 7.1~8.10) 670.5톤

** 냉장 보관 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사용할 경우, 생육이 고르지 않거나 생리 장애로 생산성 감소가 우려됨

이에, 주요 마늘 생산지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제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원산지 위반 등 위법 행위 의심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종자의 품질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씨마늘 유통 관련 신고 및 문의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9, 0170)로 하면 된다.

* 연도별 가을 채소(마늘, 양파 등) 적발 현황: '22년(15건) → '23(11) → '24(14) → '25(20)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올해 마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산지 씨마늘 수요 증가에 따라 식용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씨마늘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적법한 씨마늘 유통으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참고 올바른 마늘 종자 유통 홍보 리플릿

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책임자	과장	이남윤	(054-912-0150)
		담당자	사무관	금경연	(054-912-0168)



올바른 마늘 종자의 거래로 품질 좋은 마늘을 생산합시다!



농가(구매자)



- ✓ 종자업 등록 또는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 구매
- ✓ 포장재의 '품질표시' 사항을 세밀히 확인 후 구매
- ✓ 거래영수증과 포장재를 보관하여 종자 결함 의심 상황 등에 대비

판매업자(생산·수입·판매)



종자업 등록 (시·군)

- 마늘 종자(종구)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시설기준(철재하우스 330㎡ 이상, 육종포장 3,000㎡ 이상)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 품질표시 종구 "그대로 판매만" 할 경우? → '종자업 등록'(채소) 대상 **아닙니다**.
- 가공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 '종자업 등록'(채소) 대상**입니다**. *다만, 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됨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국립종자원)

-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품종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문의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서, 증빙서류 및 물건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신고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204



유통종자의 품질 표시

-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세부 표시사항은 별도 확인)

품질표시 사항		품질표시 예시(사진)
① 품종의 명칭	④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② 포장 당 무게 또는 개수	⑤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③ 종자업 등록번호	⑥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등	



벌칙·과태료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종자업 등록없이 종자업을 하는 경우(종자산업법 제37조 위반)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없이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자산업법 제38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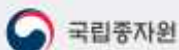
- 수입 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고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종자산업법 제41조 위반)
- 보증을 받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종자산업법 제36조 위반)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단위: 만원)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및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100	300	500	700	1,000
발아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및 묘를 진열·보관한 경우	10	30	50	70	100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300	500	700	1,000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행정처분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이상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 취소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또는 묘를 판매 보급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외국산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경우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 취소



(종자유청) 054-912-0165-7
www.seed.go.kr



(고객지원) 044-868-6332
www.garlic.or.kr

